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- 780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8월 20일  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###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북한이탈주민을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(안제1조)
- 나.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 반영하여 매점규모 제한 단서를 삭제(안제3조)
- 다. 계약대상자의 직접운영 강화 및 허가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 마련(안제7조, 안제8조)
- 라.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 규정(별표1)
- 마.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선계약 순위 추가 및 수급자의 범위 규정(별표1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(참조 : 사회복지과장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1(노량진동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(전화 : 02-820-9712, FAX : 02-820-9989, E-mail : roniron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(규칙)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(<http://law.dongjak.go.kr/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 
조례·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 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###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2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3에 따라,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 등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노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을 말한다.
2. “매점”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, 사무용품,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 중 “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“신문판매대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매점 및 자동판매기(이하 “매점 등”)”로 하고, “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0㎡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의”를 “매점 등의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동작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”을 “매점 등”으로 하고, 제5조제2항 내지 제5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

2. 위임장(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)
3.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), 한부모가족증명서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제7조 중 “신문판매대 등”을 “매점 등”으로 하고, “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”를 “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 존·비속의 배우자에 한다.”로 한다.

제7조제8조를 각각 제9조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계약해지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

1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
2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
3.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
4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
5.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,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중 “「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

순위	장애인	노인	한부모가족	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가족 및 유족	북한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<b>1~2급</b>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65세 이상 노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」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2	장애등급이 <b>3~4급</b>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65세 이상 노인으로서 <b>미과세대상자</b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<b>이외의 자</b>	「독립유공자에 우에 관한 법률」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<b>미과세 대상자</b>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<b>1순위 이외의 자</b>
3	장애등급이 <b>5~6급</b> 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<u>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</u>				

**<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>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2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서 정한 사람 및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명 <u>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2조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5조, 「<u>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</u>」 제16조의 2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2, 「<u>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 제26조의3에 따라, 서울특별시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<u>장애인, 노인, 한부모가족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이</u>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장애인 등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 제25조에 따른 노인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매점”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, 사무용품,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.</li> </ol>

제2조 (적용의 범위)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·복권판매대,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(이하 “신문판매대 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0㎡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.

② 생략

1. ~ 3. 생략

제3조(사전공고)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동작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청)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(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)

2. 삭제

3. 장애인등록증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생략

제3조 (적용의 범위) ① -----  
----- 매점 및 자동판매기(이하 “매점 등”이라 한다)을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(삭제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사전공고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매점 등의  
-----  
----- 서울특별시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-----.

제5조(신청)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1.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(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)

2. 위임장(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)

3. 장애인증명서, 수급자증명서(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), 한부모가족증명서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4. (현행과 같음)



<p>제5조(우선계약) 생략</p>	<p>제6조(우선계약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업의 의무)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<u>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사업의 의무) ----- -----<u>매점 등을</u>----- ----- -----, <u>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계약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.</u> <u>단, 대리인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계약자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8조(계약해지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</li> <li>2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</li> <li>3.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</li> <li>4.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</li> <li>5.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단, 제1항제3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</p>
<p>제7조(사용료)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<u>「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	<p>제9조(사용료) ----- ----- <u>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-----.</u></p>
<p>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시행규칙) ----- -----.</p>

별표 1

순위	장애인	65세 이상	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	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	장애인등급 1~2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2	장애인등급 3~4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미과세대상자	저소득모부자가 정 선정기준에 속한 사람	미과세대상자
3	장애인등급 5~6등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	

별표 1

【별표 1】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					
순위	장애인	노인	한부모가족	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 그가족및유족	부한 이탈주민
1	장애등급이 1~2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65세 이상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,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
2	장애등급이 3~4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65세 이상 노인으로 <b>미과세 대상자</b>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 <b>이외의 자</b>	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「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<b>미과세 대상자</b>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대상자 중 <b>1순위 이외의 자</b>
3	장애등급이 5~6급으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				